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001

발의연월일: 2022. 10. 31.

발 의 자:윤창현·윤한홍·박대수

정우택 · 장동혁 · 전주혜

윤주경 · 김영식 · 구자근

이채익 의원(10인)

제안이유

디지털자산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이용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글 로벌 정합성을 고려하여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그러나 2018년 1,700억원 수준이었던 디지털자산 불법행위 검거규모 가 지난해 3조 1,300억원으로 18배 이상 급증하고, 언론보도에서도 디 지털자산의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가 빈번하게 다뤄지고 있음.

특히 2022년 상반기에 발생한 루나-테라 사태로 인한 다수 이용자의 대규모 피해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앞당기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통해 시급하게 이용자 보호에 나서야 할 필요성과 이유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이에 국제적 논의동향과 글로벌 기준 마련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통한 이용자 보호 규율 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추후 이를 보완해가는 점진적 •단계적 입법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

단되는 상황임.

이에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통해 이용자 자산 보호(디지털자산사업자의 파산 등으 로부터 이용자 예치금 보호 등),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 종・부정거래 행위 등) 금지, 자율감시(시장감시와 신고의무 부과 등) 책임 등 불공정거래 규제 등을 규정하고 동법 개정을 통해 이를 집행 할 전담조직인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업무범위를 규정함(안 제 23조의2 신설).
- 나. 디지털자산위원회의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 자격과 위원 임기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23조의3 신설).
- 다. 디지털자산위원회 회의 소집과 위원회의 의결방법, 조칙과 규칙제 정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23조의4 및 제23조의5 신설).
- 라.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대해 금융감독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6 신설).
- 마. 이 법에서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한 권한 중 일부를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함(안 제24조제1항, 제58조, 제61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창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9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5절(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디지털자산위원회

- 제23조의2(디지털자산위원회의 설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둔다.
 - 1. 디지털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 2.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 중 디지털자산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 3. 디지털자산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로 부터 위임받은 업무
-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디지털자산위원회에 부여된 업무 제23조의3(디지털자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위원 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 ②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 1. 디지털자산거래,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사람
- 2.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회계학 또는 이학·공학을 전 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 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 3. 그 밖에 디지털자산거래,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 기제공무원으로 보(補)한다.
- ④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이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디지털자산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⑤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디지털자산위원회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3조의4(회의 등) ① 디지털자산위원회의 회의는 2명 이상의 디지털 자산위원회 위원이 요구할 때에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 다. 다만,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디지털자산위원회의 회의는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디지털자산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제1호·제2호, 같은 조제5항·제6항,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5항, 제12조 및 제13조 중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위원회"로 본다.
- 제23조의5(조직·규칙 등) ①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디지털자산위원 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②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제2항의 규칙을 제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23조의6(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제23조의2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을 지도·감독한다.
- 제24조제1항 중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디지털자산위원회"로 한다.
- 제58조 중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디지털자산위원회"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를 "금융위원회, 증권 선물위원회 또는 디지털자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권 선물위원회나"를 "증권선물위원회, 디지털자산위원회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제23조의2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69조제1항 중 "위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위원,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또는 디지털자산위원회"로 한다.

제70조 중 "증권선물위원회 및"을 "증권선물위원회, 디지털자산위원회 및"으로 한다.

제71조 중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 위원회 및 디지털자산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절 디지털자산위원회
<u><신 설></u>	제23조의2(디지털자산위원회의
	설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둔다.
	1. 디지털자산시장의 불공정거
	래 조사
	2.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 중 디
	지털자산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3. 디지털자산시장의 관리・감
	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
	용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
	<u>무</u>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디지
	털자산위원회에 부여된 업무
<u><신 설></u>	제23조의3(디지털자산위원회의
	<u>구성 등) ① 디지털자산위원회</u>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명은 상임으

로 한다.

- ②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1. 디지털자산거래,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공무원이었던 사람
- 2.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 경영학·회계학 또는 이학· 공학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 3. 그 밖에 디지털자산거래,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 관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보(補)한다.
- ④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이

<신 설>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디지털자산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⑤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디지털자산위원회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의4(회의 등) ① 디지털자산위원회의 회의는 2명 이상의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이 요구할 때에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이 요구할 때에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이 소집한다. 다만,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은 단독으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디지털자산위원회의 회의는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디지털자산위원회에 관하여
 는 제11조제4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12조

<신 설>

<신 설>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① 금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① 금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디지털자산위원회-----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5항, 제12조 및 제13조 중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 산위원회"로 본다.

제23조의5(조직·규칙 등) ①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디지털자 산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규 칙으로 정한다.

②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 된 것 외에 디지털자산위원회 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칙을 제정할 때 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3조의6(금융감독원에 대한 지 도·감독)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제23조의2 각 호의 업무에 관 하여 금융감독원을 지도 · 감독 한다.

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② (생략)

제58조(자료의 제출) 원장은 <u>금융</u> 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가 요 구하는 금융감독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 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데 필요한 명 령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u>증권선물위원</u> <u>회나</u>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위 법하거나 공익 보호 또는 예금 자 등 금융 수요자 보호 측면 에서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하 면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 시킬 수 있다.

③ (생 략)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자료의 제출) <u>금융</u>
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디지털자산위원회
제61조(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 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
원회 또는 디지털자산위원회
②증권선물위원
회, 디지털자산위원회 또는
③ (현행과 같음)
④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제23조
의2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금융
감독원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제6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① 금융위원회 <u>위원 또</u> 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 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생 략)

제70조(행정심판) 금융위원회, <u>증</u> 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내린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71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 른 법령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u>매우</u>		<u>구 등</u>	of	111	Ĺ	[성 9	<u> </u>	Щ (<u>에</u>
	는	ユ	처-	분의	전-	부	또?	느	일.	부
	를	취 :	소 하	거니	- ユ	줕] 행	을	정	기
	시킬	<u> </u>		<u> 있다.</u>						
제	69조	:(뉱	널칙	적	용에	서	의	공	무	원
	의제)	1				우	l 원	.,	증
	<u>권선</u>	물	위원	<u></u> 보회	위육	린	또	<u>=</u>	디	기
	털지	산	위육	<u> 일회</u> -						
			•							
	2 ((현	행고	구 같	음)					
제				ㅏ 같 심판					- — — -	<u> </u>
제	70조	_(ক্	생정)				_	
제	70조 권선	:(호	행정 위유	심판)	지	털지	<u> </u>	_	
제	70조 권선	:(호	행정 위유	심판 일회,)	지	털지	<u> </u>	_	
제	70조 권선	:(호	행정 위유	심판 일회,)	지	털지	<u> </u>	_	
제	70조 권선 회 	(호 <u>및</u>	위 위 유	심판 일회,) 디	지	털지	<u> </u>	_	
	70조 <u>권선</u> 회 	<u>및</u>	위 위 유	심판 실회,) <u>디</u> 	<u> </u>	털ス 	<u> </u>	·위·	<u>원</u>
	70조 <u>권선</u> 회 71조	<u>및</u>	행정 위원 변한	심판 <u></u> 일회,) <u>디</u> 위탁	<u>지</u>	털 Z	<u> </u>	원 3	원 회,
	70조 권선 회 71조 증권	<u>및</u> (전	생정 위원 원한 물유	심판 일회,) 디 위탁)	<u>ス</u>	털ス 금 융 디ス	<u>- 위</u>	-위· -위· 원호 자·	원 회,
	70조 권선 회 71조 증권	<u>및</u> (전	생정 위원 원한 물유	심판 변회,) 디 위탁)	<u>ス</u>	털ス 금 융 디ス	<u> </u>	원호 자·	원 회,
	70조 권선 회 71조 증권	<u> 물</u> 및(군 (군 (왕정 위원 원한 물유	심판 변회,) 위탁 회 및	<u>지</u>	<u>털</u> ス	<u> </u>	원호 <u>자</u>	- 원 의, 산